

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규정

- 제정 : 1999. 10. 10.
- 개정 : 2005. 10. 1.
- 개정 : 2009. 12. 2.
- 개정 : 2015. 5. 13.
- 개정 : 2018. 3. 1.
- 개정 : 2019. 6. 18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2 및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학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본 교의 산업체위탁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 구성) 위원회는 위원장을 총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교학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위원은 위탁업체 임직원 및 대학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(임명)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, 외부위원이 1/2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.

제3조(위원장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위탁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.

1. 위탁교육학과의 개설
2. 위탁 의뢰 산업체에 대한 적부 판정
3. 위탁생의 선발기준
4. 위탁교육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
5. 위탁교육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
6. 위탁산업체의 시설 및 교육자력이 있는 자의 활용에 관한 사항
7. 본교와 위탁산업체의 상호지원에 관한 사항
8. 기타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

제6조(회의 및 의결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,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.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7조(실무전담반 편성운영) ① 위원장은 위탁교육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② 실무전담반의 편성은 위원회의 위원과 실무담당자 및 산업체 임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한다.

③ 실무전담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제8조(간사)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교직원 중에 위원장이 임 명한다.

제9조(수당 등) 위원회의 위원과 실무전담반 및 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위탁교육계약의 체결) ① 위탁교육계약의 체결은 본 규정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수립을 완료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과 산업체의 대표가 위탁교육 계약 서에 서명·날인함으로써 체결된다.

② 위탁교육계약서에 약정할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제11조(운영세칙) 본 규정으로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0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12월 2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5월 13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18일 부터 시행한다.